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계약 목적 등)

-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재 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해제)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④ 비급여 대상 항목과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1와 같다.

■ (이용료 납부)

-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 3. 매월 이용료 등의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때
-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025년 주야간보호 수가 계산

2025 01. 01 적용

1등급

1일 수가			비급여				합계								
67,770	15%	10,165.5	일수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9%	6,099.3	25일	70,000	57,500	25,000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22일	61,600	50,600	22,000	223,641	134,200	357,841	134,185	134,200	268,385	89,456	134,200
	6%	4,066.2	21일	58,800	48,300	21,000	213,476	128,100	341,576	128,085	128,100	256,185	85,390	128,100	213,490
				20일	56,000	46,000	20,000	203,310	122,000	325,310	121,986	122,000	243,986	81,324	122,000

2등급

1일 수가			비급여				합계								
62,780	15%	9,417.0	일수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9%	5,650.2	25일	70,000	57,500	25,000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22일	61,600	50,600	22,000	207,174	134,200	341,374	124,304	134,200	258,504	82,870	134,200
	6%	3,766.8	21일	58,800	48,300	21,000	197,757	128,100	325,857	118,654	128,100	246,754	79,103	128,100	207,203
				20일	56,000	46,000	20,000	188,340	122,000	310,340	113,004	122,000	235,004	75,336	122,000

3등급

1일 수가			비급여				합계								
57,960	15%	8,694.0	일수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9%	5,216.4	25일	70,000	57,500	25,000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22일	61,600	50,600	22,000	191,268	134,200	325,468	114,761	134,200	248,961	76,507	134,200
	6%	3,477.6	21일	58,800	48,300	21,000	182,574	128,100	310,674	109,544	128,100	237,644	73,030	128,100	201,130
				20일	56,000	46,000	20,000	173,880	122,000	295,880	104,328	122,000	226,328	69,552	122,000

4등급

1일 수가			비급여				합계								
56,380	15%	8,457.0	일수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9%	5,074.2	25일	70,000	57,500	25,000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22일	61,600	50,600	22,000	186,054	134,200	320,254	111,632	134,200	245,832	74,422	134,200
	6%	3,382.8	21일	58,800	48,300	21,000	177,597	128,100	305,697	106,558	128,100	234,658	71,039	128,100	199,139
				20일	56,000	46,000	20,000	169,140	122,000	291,140	101,484	122,000	223,484	67,656	122,000

5등급 / 인지지원등급

1일 수가			비급여				합계								
54,780	15%	8,217.0	일수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9%	4,930.2	25일	70,000	57,500	25,000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22일	61,600	50,600	22,000	180,774	134,200	314,974	108,464	134,200	242,664	72,310	134,200
	6%	3,286.8	21일	58,800	48,300	21,000	172,557	128,100	300,657	103,534	128,100	231,634	69,023	128,100	197,123
				20일	56,000	46,000	20,000	164,340	122,000	286,340	98,604	122,000	220,604	65,736	122,000